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 1999. 6. 24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6. 25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99. 7. 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옴부즈만담당 정원철)

가. 제안이유

○ 옴부즈만의 자격 기준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현실화되었기에 이에 따른 보수지급기준도 현실화하고자 보수지급기준을 개정

나. 주요골자

○ 보수지급기준 변경

- 현행 : 일반직 4급 공무원 27호봉 기준
- 개정 : 일반직 4급 공무원 10호봉 기준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0호
의결년월일	99. 7. 8 (제71회)

제출년월일 : 1999. 6. 24

제출자 : 부천시장

□ 개정이유

- 옴부즈만의 자격기준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현실화되었기에 이에 따른 보수지급기준도 현실화하고자 보수지급기준을 개정

□ 주요골자

○ 보수지급기준 변경(조례 제4조제1항)

- 현행 : 일반직 4급 공무원 27호봉 기준
- 개정 : 일반직 4급 공무원 10호봉 기준

부천시시민음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민음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일반직 4급 공무원 27호봉”을 “일반직 4급 공무원 10호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